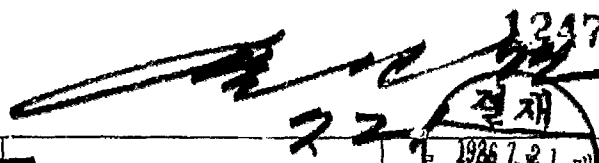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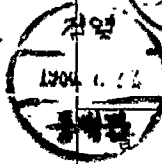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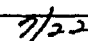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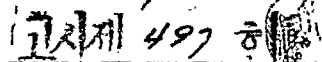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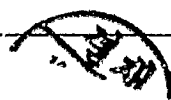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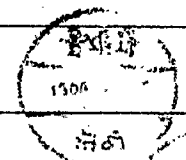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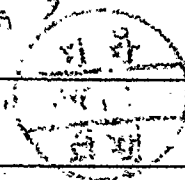


보도	필요	·	불요
방법	자료제공	·	회견(설명)
과장			국장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공원30114-606	(전화: 731-6411)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영구.		
시행일자	86. 7. 22		
보조기관	부시장 환경녹지국장 공원과장		
기안책임자	공원관리계장 (이갑한)	  송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칭	시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시설 사용료 결정고시		
제 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 별표 2규정에의한 공원시설 사용료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코자 합니다. (86. 7. 18서울시 사용료 수수료 조정심의회 심의)			
첨부	1. 고시문안.		
	2. 사용료, 수수료 조정심의회결과. 끝.		
제 2안			

수신	공보관
제목	같은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사용료를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조치하기 바람.	
첨부	고시문 . 끝.
	
계 3 인	
수신	동대문구청장
참조	공원녹지과장
제목	같은건 결정통보
1. 공녹 30114-459(86.7.10)에 의거 전달한 용마자연공원내 유희	
시설 사용료를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함.	
첨부	사용료 결정내용 1부. 끝.
 	

용마자연 공원내 유희시설 사용료 결정

=====

- 조정사유 -- 사유공원용지상 민자로 조성한 용마자연내 유희시설 사용료 결정
- 조정기준 -- 인근 유사시설 사용료의 범위내로 조정
(도시공원 조례 제6조)
- 조정내용

구 분	시 설 평	사용구분	사업자요구	건 의 안		심의안	비고
				구 청	주관과		
용마자연 공원내 유희시설	청용열차	어 른 1회	1,100	1,100	1,100	1,100	어린이대 공원및그 린파크내 유사시설 사용료 수준임
		청소년 1회	900	900	900	900	
		어린이 1회	600	600	600	600	
	관 탐 차	어 른 1회	600	600	600	600	
		청소년 1회	400	400	400	400	
		어린이 1회	300	300	300	300	
	전자전투기	어 른 1회	500	500	500	500	
		청소년 1회	350	350	350	350	
		어린이 1회	200	200	200	200	
	다람쥐롤	어 른 1회	400	400	400	400	
		청소년 1회	300	300	300	300	
		어린이 1회	200	200	200	200	
	회전보트	어 른 1회	400	400	400	400	
		청소년 1회	300	300	300	300	
		어린이 1회	200	200	200	200	
	회전그네	어 른 1회	400	400	400	400	
		청소년 1회	300	300	300	300	
		어린이 1회	200	200	200	200	
	회전목마	어 른 1회	300	300	300	300	
		청소년 1회	200	200	200	200	
		어린이 1회	200	200	200	200	
	도깨비집	어 른 1회	300	300	300	300	
		청소년 1회	250	250	250	250	
		어린이 1회	200	200	200	200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6.7.18 265

도시공원 시설사용료 결정

관장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사용구분	금액	비고
용마자연 공원내 유학시설	청용열차	어른 1회	1,100	
		청소년 1회	900	
		어린이 1회	600	
	관람차	어른 1회	600	
		청소년 1회	400	
		어린이 1회	300	
	전자전투기	어른 1회	500	
		청소년 1회	350	
어린이 1회		200		
다람쥐통	어른 1회	400		
	청소년 1회	300		
	어린이 1회	200		
회전보트	어른 1회	400		
	청소년 1회	300		
	어린이 1회	200		
회전그네	어른 1회	400		
	청소년 1회	300		
	어린이 1회	200		
회전목마	어른 1회	300		
	청소년 1회	200		
	어린이 1회	200		
도깨비집	어른 1회	300		
	청소년 1회	250		
	어린이 1회	200		

관장

서 울 목 별 시

세정 22670-249

221

86. 7. 18.

수신 환경녹지국장

참조 공원과장

제목 사용토 수수로 조정 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공원 30114-539 (86. 7. 12)호외 용마자연공원에 유희시설 사용
토 결정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용토 수수로 조정 심의회 심의결과를 아
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심의결과 --- 원안 (주관과 의견) 통과.

첨부본업: 사용토 수수로 심의 의뢰요약서 1부 끝.

선 결	공원과장		결재 (공람)	관리제장	출
접수일시	1986. 7. 18. 시 분	번호	3181		
처리과	공원과			제	1867

사용토 수수로 조정 심의회 위원장

신세정과장 1867022

심의안건 : 용마자연공원 시설 사용료 결정

심의 의뢰부서 : 환경녹지국(공원과)

심의내용

1. 의뢰사유 — 사유지상 민자로 조성한 동대문구 망우동 소재 용마자연 공원 내 유휴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조예 제 5조 (사유지상 민자시설 사용료는 인근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승인함)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결정.
2. 심의의뢰부서 건의안

시설명	사용구분	이 용 료 안			비 고 (타시설비교)		
		사업자신청	구청의견	주관과의견	어린이대공원	그린파크	기 타
1. 청풍열차	어 른 1회	1,100	1,100	1,100	1,100		
	청 소년 1회	900	900	900	900		
	어 린이 회	600	600	600	600		
2. 회전목마	어 른 1회	300	300	300	300		
	청 소년 1회	200	200	200	200		
	어 린이 1회	200	200	200	200		
3. 전자전투기	어 른 1회	500	500	500	500		
	청 소년 1회	350	350	350	350		
	어 린이 1회	200	200	200	200		
4. 회전보트 및 회전그네	어 른 1회	400	400	400		300	
	청 소년 1회	300	300	300		300	
	어 린이 1회	200	200	200		200	
5. 바람저울	어 른 1회	400	400	400	400		
	청 소년 1회	300	300	300	300		
	어 린이 1회	200	200	200	200		
6. 관람차	어 른 1회	600	600	600	600	300	
	청 소년 1회	400	400	400	400	300	
	어 린이 1회	300	300	300	300	200	
7. 도깨비집	어 른 1회	300	300	300	300		
	청 소년 1회	250	250	250	250		
	어 린이 1회	200	200	200	200		

3. 실무심의의 조정안

0 조정안 — 원안 (주관과 의견) 통과

0 조정사유 — 어린이 대공원 요율 적용